
입 법 정 보

2019-23호



목 차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4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4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
4.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5
5.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6
6.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7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7
8.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8
9.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8
10.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10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
1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13
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3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4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4
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5
19.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5
2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6
21.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7
2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7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8
2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
25.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
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22
2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3
2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3
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4
30.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촌식품부)	25
31.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5
32.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5
3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3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6
3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7
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28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8
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9
39. 해양수산물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0
4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1
4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2
42.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2
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3
4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4
45.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4
46.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5
4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5
48.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5
4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6
50.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6
5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7
5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9
53.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총리비서실)	39
54.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0
5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1
56.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2
5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3
58.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3

정부입법 예고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11. 25. • 마감일자 : 2020. 1. 6.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보증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기존의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보증범위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함(안 § 3, § 22, § 28, § 37의2)
 - 1)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보증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보증대상에 추가
 - 나.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안 § 3의2)
 - 1)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기회를 확대하도록 연금가입이 가능한 연령을 55세로 변경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11. 26. • 마감일자 : 2020. 1. 6.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대상범위 확대,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의 무 규정, 기타 중복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의 범위에 “스포츠베팅”을 포함(시행령 안 별표 2 제8호 개정)
 - 나. 게임 이용자의 1일 손실한도와 그에 따른 이용제한에 관한 항목 삭제(시행령 안 별표 2 제8호 다목 삭제)
 -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자가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방안을 게임물관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이행하도록 개정(시행령 안 별표 2 제8 호 사목 개정)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1. 26. ● 마감일자 : 2020. 1. 6.
-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버스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처분 기준 강화로 근절 필요 및 광역 급행버스(M버스) 사업계획 변경 업무 권한 위임이 일부 누락 중복되어 업무처리에서 혼선발생으로 위임 조항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가. 음주운전시 처분기준 강화
 - 1) 여객자동차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2배 이상 강화
 - 2)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 사정을 운송업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상향부과(현행 10만원 → 변경 50만원)
 - 나. 광역급행버스(M버스) 권한 위임 정비
 - 1) 원칙적으로 광역급행 버스에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한을 대광위에 위임하되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변경 등 경미한 사업계획변경 인가 및 신고 수리는 시도에 위임

4.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9. 11. 26. ● 마감일자 : 2020. 1. 6.
- 아직 수습되지 못한 6·25전쟁 중의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하여 전사자의 유가족 유전자(DNA)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본인의 유전자 시료(試料)를 제공하여 6·25전쟁 중의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1천 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 '19. 4. 2부로 개정하였으나, 개정 이전 이미 신원이 확인된 132위의 유가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소급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칙상 시행일 수정과 적용례 신설

나. 별표 3의 제3호 ‘다’ 목 일부 수정 및 제4호 신설

5.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1. 27.

● 마감일자 : 2019. 12. 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8. 12. 24.)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시행령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 절차 규정신설(안 제7조의2)

1)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중단명령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2) 서면 통지를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함.

3) 과징금의 금액은 중단기간에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고,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1일당 출고·수입량에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해야 하는 양의 비율 및 재활용 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곱하여 산출함.

나. 재질·구조 평가 결과 미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8 제2호다목 및 라목 신설)

1)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
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6.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11. 27. ● 마감일자 : 2020. 1. 6.
- 지방분권 강화 및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등 법령정비 과제 추진과 어장구역 야간 표지시설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 가. 「수산업법」 제8조제4항은 어장의 수심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임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 나.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시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하여 제출이 가능토록 규정(안 제23조제1항제1호, 별지제23호·제24호서식)
 - 다. 어장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야간 표지시설의 통일성을 위해 설치방법과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호)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11. 27. ● 마감일자 : 2020. 1. 6.
-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부품·소재기업 지원 및 창업기업의 원활한 조달시장 진출 등을 위해 “공공조달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시행령에서 동 제도의 신청서 양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 있음.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작성해야 할 신청서 양식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공조달 상생협력”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출하

는 신청서류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8조).

나. 제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사업계획서 서식을 신설(안별지 제4호 서식).

8.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11. 27.

• 마감일자 : 2020. 1. 6.

○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기업 확인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기업 확인, 확인취소 등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신설, 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11조의3제1항)

다. 장애인기업 확인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신설 안 제11조의4)

라. 장애인기업 확인 등 업무수행을 위한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조항 규정(신설 안 제11조의5)

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소속 부처명(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변경(안 제4조제3항제1호)

9.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1. 27.

• 마감일자 : 2020. 1. 6.

○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405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세부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1)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2)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함.
- 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부터 제12조)
 - 1)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위임된 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임기·회의개최 등의 요건을 규정함. 또한, 전문적인 안전검토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안 제13조)
 -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준 등(안 제2조, 제14조부터 제18조)
 -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되기 위한 연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의 규모를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료기기기업은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에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의료기기기업은 30억원 또는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에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심의를 위한 세부 인증기준과 인증의 지위 승계심의 예외요건, 인증의 취소, 우대조치 중단 및 반환 절차, 기업 유형구분 등을 규정함.
- 마.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절차 등(안 제19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대상을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의 적용 분야, 기존 의료기술을 획기적인 개선 또는 개선이 예상되는 분야, 의료기기의 적용되는 핵심기술 개발이 시급한 분야,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 등에 있어 대체 의료기기가 부재하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로 규정함.

- 2) 혁신의료기기군을 지정하거나 재평가하여 고시할 때에는 의료기기에 적용된 핵심 기술의 보편화 여부, 혁신의료기기군의 유효기간 이내에 상용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혁신의료기기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바.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등(안 제20조)

- 1) 혁신의료기기를 지정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신청서와 개발경위, 국내외 신청제품 또는 유사제품 사용현황, 작용원리, 성능 및 사용목적, 사용방법 및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2)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 협의요청을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협의 의견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사. 연구개발정보관리기관·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안 제21조부터 제25조)

- 1)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개발 정보의 보급 및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력을 파견을 요청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10.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1. 27.
- 마감일자 : 2020. 1. 6.
-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405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절차 및 고시 등(안 제2조 및 제3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위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신청공고를 하도록 규정함.
 -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함.
 -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 이내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의 도안 및 표시방법을 규정함.
- 나. 인증의 지위승계 및 연장 신청, 자료요구 등(안 제4조부터 제6조)
-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위 승계 및 연장신청을 위한 절차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요구의 절차 등을 규정함.
- 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 방법 등(안 제7조 및 제8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로 세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지원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의 우선 참여 절차와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 대상을 규정함.
- 라. 임상시험 및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안 제9조 및 제10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연구개발 또는 제조허가, 수출국 인허가 획득 등 의료기기 국내외 임상시험과 국내 임상시험 기반구축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홍보관 운영, 혁신의료기기 등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홍보·전시,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11. 27.
 - 마감일자 : 2020. 1. 6.
-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 이용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경품 획득 및 목표점수 달성 가능성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나, 이러한 운영방식은 한 명이 여러 게임

물을 동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과다 금액 투입 유도, 나아가 사행성 조장 및 불법 환전행위까지 초래하여 자동진행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추가(안 제17조 별표2 제9호)

-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대신 조작하게 하여 자동으로 게임 이용 및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 및 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금지함.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1. 27.
- 마감일자 : 2020. 1. 6.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등의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등이 요구되는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요건 취득이 어려워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 연령이 고령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등의 운전경력요건을 폐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되, 무분별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현재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버스, 화물자동차 등과 달리 택시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택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자격시험의 공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시험 시행 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설비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 양수기준 합리화(안 제19조, 제21조, 제35조 등)

- 1) 종전에는 개인택시 양수요건 취득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등의 경력요건이 요구되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나.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기관 변경(안 제45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 등)

1) 종전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택시연합회에서 실시하였으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기관을 변경함.

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 합리화(안 별표 6의2)

1)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호출 또는 통신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확보한 경우도 통신설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함.

1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1. 27.

• 마감일자 : 2020. 1. 6.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6416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1. 27.

• 마감일자 : 2020. 1. 6.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실시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부담하며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지 않도록 하되 일부 사립학교는 그 자율성을 존중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외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5조의8)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1. 27. • 마감일자 : 2020. 1. 6.
-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필요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서 필요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으로 동법의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영유아 공통 교육 보육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함께 연장하고, 일부 기준재정수요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과 관련하여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별표 4)
 - 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준재정수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항목 산정 제외기간 연장(안 별표1, 측정항목6)
 - 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항목을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서 제외(안 별표2, 측정항목3)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1. 27. • 마감일자 : 2020. 1. 6.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으로 동법의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영유아 공통 교육 보육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함께 연장하고, 일부 기준재정수요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준재정수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항목 산정 제외기간 연장(안 별표2, 측정항목6)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항목을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서 제외(안 별표3, 측정항목3)

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1. 27. • 마감일자 : 2020. 1. 6.

○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다양한 교육 인재양성에는 미흡하고, 입시 위주 교육으로 고교서열화를 유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함.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된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정비하여 시·도교육청의 관할 범위 내에서 학생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인재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안 90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 1) 특수목적고등학교 유형 중 외국어고와 국제고 삭제(안 제90조 개정)
-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규정 삭제(안 제91조의3 개정)
- 3)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규정 삭제(안 제91조의4 개정)

나.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된 전국단위 모집 특례 정비(안 부칙 제 21375호 제4조)

- 1) 전국단위 모집 특례 삭제(부칙 제21375호 제4조 개정)

19.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1. 27. • 마감일자 : 2020. 1. 6.

○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다양한 교육 인재양성에는 미흡하고, 입시 위주 교육으로 고교서열화 유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지정취소 동의 신청 등 관련 조항 삭제(안 56조, 57조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 나. 자율형 사립고 지정 및 지정취소 동의 신청 관련 조항 삭제(안 제56조, 제57조)
- 다.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 관련 기준 삭제(안 제72조)
- 라. 자율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 납부 기준, 교육과정 운영 기준 등 관련 조항 삭제(안 제77조, 제78조)
- 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정상화 관련 조항 삭제(안 제80조)

2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11. 27. • 마감일자 : 2019. 12. 16.
-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를 도입하여 그간 분리 운영하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 개편함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상 관련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내일배움카드 통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횟수 규정 삭제(안 제66조)
 - 1)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 1년을 전제로 계좌 발급 횟수를 ‘최대 3회’ 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 나. 내일배움카드 통합에 따른 훈련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조정(안 제68조)
 - 1) 훈련공급·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훈련시간’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빈번한 입·이직 등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1.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9. 11. 27.
- 마감일자 : 2020. 1. 6.
- '19년 7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의 규정에서도 장애 등급을 삭제하려는 것임

2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11. 28.
- 마감일자 : 2020. 1. 7.
- 낚시어선 이용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양수질과 해양환경오염이 유발되고 낚시어선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안개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화하는 한편,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금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법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강화(안 제16조제1항 제4호 ~ 제6호 신설)
 - 1) 낚시어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2년 이상) 보유, 전문교육 이수 요건 추가
 - 나. 낚시어선의 출항제한 구체화 (안 제19조제4호 개정)
 - 1)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교각, 등부표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다. 검정기관의 변경신고 대상 (안 제21조의2 개정)
 - 1) 낚시도구 및 미끼의 안전성 관리 검정기관의 변경신고가 필요한 중요사항(기관명, 검정대상,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등) 근거 마련
 - 라. 권한의 위탁 업무 추가 (안 제23조 제3항 제4호 신설)
 - 1) 위탁하는 업무에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인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업무 추가

마.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추가 등(안 별표 4 개정)

- 1) 야간영업하는 낚시어선 사고 발생시 구조자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므로 야간항행을 하는 낚시어선에 ‘구명조끼등’ 착용을 의무화하고 야간항행 정의 및 각 설비 기준을 명확화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 (안 별표 6 개정)

-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금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태료 금액) 마련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1. 28.

● 마감일자 : 2020. 1. 7.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에 따른 제출서류 추가 및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실시에 따른 신청절차와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기준, 검정기관 변경신고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영업구역 위반 등 행정처분기준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준비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법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낚시어선업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등 (안 제16조제1항 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 1)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 및 변경신고시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안전성 검사증서, 승무경력 증명서류, 전문경력 이수 증서, 낚시어선 안전요원 자격관련 서류) 및 관련 서식(낚시어선업 신고서) 정비

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신청절차 등 마련 (안 제16조의2 ~ 제16조의4 신설,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3서식 신설)

- 1) 낚시어선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성 검사 신청, 증서발급, 검사의 시기 등 마련

다.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기준 등 마련 (안 제18조의2 신설)

- 1)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이 필요한 낚시어선 기준 제시(야간항행

- 하는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하고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등)과 임무(낚시 승객의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 규정
- 라. 전자문서의 출입항 신고 처리 규정 마련 (안 제20조제3항 신설)
- 1) 모바일을 통한 승선자 관리 추진을 위해 전자문서의 출입항 신고 및 승선자명부 제출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 마. 검정기관 변경신고의 절차 등 마련 (안 제23조의4 신설,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별지 제20호의4서식 신설)
- 1) 검정기관의 변경신고 근거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 처리방법 등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서식(변경신청서, 지정서 등) 정비
- 바. 추가 전문교육 내용 등 반영 (안 제25조 제2항·제3항 신설, 제4항·제5항 개정)
- 1)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고의 또는 중대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로 영업정지를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에 대한 전문교육 내용을 추가하고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재해 또는 재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
- 사. 행정처분기준 추가 (안 별표 2 개정)
- 1) 낚시어선업 신고없이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처분기준 마련(1회 위반시 영업폐쇄)
- 아.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준비사항 마련 (안 별표 5 신설)
- 1)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기 위해 낚시어선업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선체, 기관, 구멍 및 소방설비 등 준비) 마련
- 자.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 (안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 1)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하여 신고확인증 분실시에도 폐업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2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11. 28. • 마감일자 : 2020. 1. 7.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허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제정(법률 제16433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범위 및 과정금 산정기준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 관련 업무 위탁 규정(안 제3조)
 - 1) 법률에 따라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위한 업무 중 품질관리체계 평가 업무 및 전문인력의 숙련도 평가 업무를 민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 전문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 및 해촉 등 규정(안 제5조 ~ 제12조)
 - 1)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공정한 조사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 등의 경우에는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가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의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다.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1)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수입업허가(변경허가), 제조업자 등에 대한 검사명령, 출입 검사,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등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위임하도록 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인증(변경인증) 및 신고(변경신고) 업무 등의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25.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11. 28. • 마감일자 : 2020. 1. 7.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405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한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총리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안 제3조, 제4조)

- 1)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의 인 허가를 위하여 제품설계 및 개발단계, 안전성 및 성능 검토단계, 임상계획서 검토단계, 기술문서 및 임상자료 검토 단계별로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각 단계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단계별 심사의 범위 및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의료기기의 단계별 심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나. 우선심사의 범위 및 신청 절차 방법 등(안 제5조)

- 1) 혁신의료기기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인증신청 시 신청서 서식의 비고란에 우선심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다. 자사의 기준규격의 타당성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안 제6조)

- 1) 자사가 제시한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규격 설정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업체가 제출한 기준규격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 기준규격을 허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함

라. 시판 후 조사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안 제7조)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상적 효과를 관찰하고 이상반응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 시판 후 조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판 후 조사대상과 조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판 후 조사대상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시판 후 조사를 위한 계획서 및 실시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등 시판 후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 마.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도입(안 제8조, 제9조)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직 인력 및 연구개발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이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조기업 인증 시 확인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의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함
- 바.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변경사항 보고 절차 규정(안 제10조)
- 1)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만 변경 허가 또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외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 변경사항에 대한 근거자료 및 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함
- 사. 신속 임상시험 실시 등을 위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14조)
- 1) 혁신의료기기의 경우에 임상시험계획서 작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내 외 국제공동임상시험 관리 현황 및 혁신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 현황 등의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이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아. 혁신의료기기 기술지원 및 표준화 사업(안 제14조, 제15조)
- 1) 혁신의료기기 시험검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기술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술 및 관리기준 표준에 대한 제개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9. 11. 28.
 - 마감일자 : 2020. 1. 10.
- 그동안 제대군인대부는 3%(일부 4%) 이율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기준

금리 인하로 최저 1.8% 수준의 대출상품(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었음. 이에 제대군인대부 연이율을 시중대출보다 낮은 2퍼센트 미만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국가보훈처장이 연이율을 최저 3퍼센트에서 최고 1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최고 연이율 적용 한도가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아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제대군인에게 국가가 수혜를 준다는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제대군인대부의 최저 연이율 하한을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추어 시중의 저금리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최고 연이율 상한을 15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추어 지속적으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

2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11. 29. • 마감일자 : 2020. 1. 9.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18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률 위임사항 신설(안 제5조)
 - 1) 해양심층수 연도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이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연도별계획의 공고내용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설

2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11. 29. • 마감일자 : 2020. 1. 8.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 입소자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면적 산입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면적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기준의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 신설(안 별표 4 제1호)

- 1) 종전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규모와 관련하여 입소정원 1명당 최소 연면적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면서 ‘연면적’의 세부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입소자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산입하도록 연면적 산입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면적’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다만, 현재 이미 지침(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을 통해 ‘연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산입할 경우 주차장법상 의무 설치 면적까지만 산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향후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부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는 연면적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지침에서 그 세부 기준을 규정하도록 함.

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1. 29. • 마감일자 : 2020. 1. 9.

-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5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안 제17조의3제1항, 별표 7의 3)
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 및 절차(안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 2) 다만, 지역경제 성장, 공공투자 확대 수요 증가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의 정책시차를 줄이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나.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안 제76조의2)

- 1)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권한이 없어 통합공시시스템에 공개가 안되고 있음
- 2)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타당성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3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12. 4.
 - 마감일자 : 2020. 1. 13.
- 최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이와 관련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의 및 선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해당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8에서 제15조의20까지 신설).

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 우대기준 마련하도록 함

4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2. 9. • 마감일자 : 2020. 1. 20.
-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규모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84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분양받은 층의 건축평면도를 추가하는 한편, 분양 후 설계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개선하고 분양광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분양계약서 포함 사항 추가(안 제9조제1항)
 - 1)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분양 건축물을 표시할 때에 공용부분의 위치·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분양받은 호실이 위치하는 층의 건축평면도를 추가
 - 나. 설계변경 동의 항목 개선(안 제10조제2호)
 - 1) 수 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 중에서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의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분양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는 수 분양자 통보 대상으로 변경
 - 다. 분양광고 항목 확대(안 제8조제1항)
 - 1) 분양 건축물의 실제 활용 가능한 용도를 수요자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양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추가

42.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2. 9. • 마감일자 : 2020. 1. 20.
- 신규 항공사 면허 발급 이후 운항증명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 발견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

기술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술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2. 10. ● 마감일자 : 2020. 2. 3.
- 기존 인허가에서 통합허가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중 조기에 허가를 받는 사업장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오염도 검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허가물량 증가 등에 대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오염도 검사기관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추가(제11조)
 - 나. 업종별 유예기간 만료 전 허가를 조기에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재검토 검토주기를 연장(부칙 제2조)

45.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12. 10. ● 마감일자 : 2020. 1. 20.
- 현행 기능성화장품 중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화장품’이 ‘아토피’ 단어로 인하여 의약품으로 오인 소지 우려가 있어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는 한편, ‘아토피’ 단어가 삭제됨에 따라 동 기능성화장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기재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다른 법령의 인용 조항을 현재기준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6.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2. 10. • 마감일자 : 2020. 1. 20.
- 자동차관리법 개정(' 19.8.27. 개정, ' 20.2.28. 시행)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지정 또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7.10.18. 개정)으로 ' 21년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 대한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2. 10. • 마감일자 : 2020. 1. 20.
- 자동차관리법 개정(' 19.8.27. 개정, ' 20.2.28. 시행)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경우 방치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방치기간 설정 필요
- 주요내용
 - 가.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 방치기간 신설(안 제6조제2항)
 - 1)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의 형태로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방치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방치 차량을 강제처리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방치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에서 위임한 방치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함으로써 무단방치 차량의 처리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48.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2. 10. • 마감일자 : 2020. 1. 20.
- 자동차관리법 개정(' 19.8.27. 개정, ' 20.2.28. 시행)으로 횡령당한 자동

차뿐만아니라 편취당한 자동차도 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령에서도 편취당한 자동차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반영 필요

○ 주요내용

가. 제31조제3항 누락 오류 수정(안 제31조제2항 및 제3항)

1) 2009년 10월 19일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시 발생한 오류(제2항이 삭제되면서 제3항이 제2항으로 변경되고 제3항 누락)를 수정하고자 함

나. 자동차관리법 개정(' 19.8.27. 개정, ' 20.2.28.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 제31조제7항)

1)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및 대포차 유통 등의 차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뿐만 아니라 편취당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2. 10. ● 마감일자 : 2020. 1. 20.

○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 등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설계의도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로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는 심의대상 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건축물이 지표면과 접하는 저층 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면적을 완화하는 한편, 굴착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관련분야 감리자를 상주하도록 하고, 위반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50.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2. 10. ● 마감일자 : 2020. 1. 20.

○ 유아의 건강·안전 관리에 관한 단위 유치원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평가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

요함. 우선 유치원 평가 기준에 유아의 건강·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유치원 평가 절차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유치원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방법으로 개정하고 또한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실시 관련, 학부모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화 추진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범위 추가와 유아 건강 관련 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유치원 평가의 기준에 유아의 건강·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 나. 유치원 평가의 절차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유치원 공시정보 자료 등을 이용한 정량평가 방법과 정성평가 방법으로 개정(안 제22조제2항)
-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범위에 유아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추가 (안 제32조의4)
-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항으로 유아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34조의2제5항 신설)

5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2. 11. • 마감일자 : 2020. 1. 20.
- 대기환경규제지역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19.4.2 공포, ' 20.4.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및 건설·농업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강화 등을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률 제·개정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삭제)
 - 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강화(안 제37조의4 및 별표 36)
 - 1) 관리기준에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하거나 거짓작성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신설함

- 다. 법률 개정으로 저공해 조치대상에 추가된 건설기계 범위 구체화 (안 제79조)
 - 1)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저공해 조치대상에 추가함
- 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성능점검 및 수시검사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2조, 제82조의4, 제82조의8부터 제82조의11까지)
- 마. 선박 도장시설에 대한 친환경 친환경도료 사용 규정 신설(안 별표 10의2)
 - 1)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미만인 도료를 사용하여 선박 도장을 할 경우에 방지시설 설치 대신 5wt%미만 도료 사용율을 적용하도록 함
- 바.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사업장에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안 별표 11)
 - 1) 대기오염물질 감축계획의 수립·이행 등에 관해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의 자가측정 시행(안 별표 11)
 - 1)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를 부여함
- 아. 건설·농업기계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안 별표 17)
 - 1) 입자상물질 기준을 강화하고, 암모니아(NH₃) 기준 및 입자개수 기준을 신설함
- 자. 자가측정 관련 불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36)
 - 1) 사업자가 조작 등으로 자가측정결과를 거짓 기록한 경우 등에 행정처분을 강화함

5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12. 11. • 마감일자 : 2020. 1. 20.
- 현행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유산 지정 신청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기준을 간소화하고, 일부 불분명한 표현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비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한자어, 모호한 용어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정비(안 제2조의9 별표2)

53.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총리비서실)

- 예고일자 : 2019. 12. 11. • 마감일자 : 2019. 12. 31.
- 최근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책과정에서부터 정부와 시민 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시민사회 발전,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중앙행정기관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증진함에 있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공익 활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는 등의 원칙을 따라야 함(안 제4조).
 - 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 다. 시민사회와의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

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라. 시·도지사는 지역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시민사회 발전,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 교육·훈련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 민간 연구소 또는 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54.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12. 10.

• 마감일자 : 2020. 1. 20.

○ 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함에 따라 사업주가 받게 되는 인력운용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및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의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비자발적 퇴직에 대한 육아휴직사후지급금 보장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육아휴직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안 제29조제1항제3호, 제5항제2호)

1)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으로 인해 정책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으므로 지원금의 50%를 조기(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에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나.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제도개선(안 제29조제3항, 제5항제1호)

1)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의 첫 1개월분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액의 50%는 3개월 주기로 먼저 지급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근거 법령 신설에 따른 조문 추가(안 제40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1) 20년부터 시행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근거법령 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지원금 간 중복지원 금지 및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회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라. 비자발적 퇴직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안 제95조제4항·제5항, 별표 4신설)

1)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복직 후 6개월간 계속고용되지 못할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마.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특례 신설(안 제95조의2)

1)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를,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5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12. 12.
- 마감일자 : 2020. 1. 21.

○ 산단 인근에 식당이 없고 입주업체가 단독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영세업체의 경우 직원들의 식사해결이 곤란함에 따라 산단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 집단급식소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대시설의 범위에 공동 집단급식소 포함 (안 제2조)

- 1)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대시설에 포함.

56.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12. 12.
- 마감일자 : 2020. 1. 21.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정부위원 구성 변경(안 제4조제1항)

-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함.

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간사 변경 (안 제4조제3항)

-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간사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함.

5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2. 12. • 마감일자 : 2020. 1. 21.
-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폐교재산 활용시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 대부료 감액, 무상대부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 1) 폐교활용법 제2조제8호 신설에 따라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하여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로 활용되는 시설”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정함.

58.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12. 13. • 마감일자 : 2020. 1. 22.
-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돌발적 상황에 대한 대처, 일시적 업무량의 폭증 등의 사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법정 기준보다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추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승인을 할 경우 그 기간은 필요최소한의 기간으로 하고, 대상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